

[]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

[]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

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90일	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		
	법인·단체명		법인등록번호		
	소재지		전화번호		
시설 현황	명칭		센터장 성명		
	소재지				
	종류/면적 상담실 m ² , 사무실 m ² , 회의실 m ² , 강의실 m ² , 실습실 m ² , 기타 m ²				
	(총 m ²)				
인력 현황	총원		센터의 장		상근하는 상담 전담자
	명		명		명
				기타	
				명	

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,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, 제6조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성평등가족부장관

고용노동부장관

귀하

시·도지사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. 사업계획서 1부 4.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(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